

# ◆ 사업경영자가 알아두면 유익한 ◆◆

## 세금정보

국세청



### 02 부가가치세 안내

### 03 세금계산서 수수요령

- 08 종합소득세 안내
- 10 기준(단순)경비율제도
- 12 원천징수 및 지급명세서 제출
- 13 현금영수증 가입 및 발급 의무화
- 14 홈택스(Home Tax) 이용 방법
- 15 불복청구 절차
- 16 그 밖에 사업자가 알아 둘 사항
- 18 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
- 19 납세자 권리현장

\* 이 책자 내용은 국세청 홈페이지 동영상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.



국세청  
NATIONAL TAX SERVICE

# 01 부가가치세 안내

## 부가가치세

- ▶ 상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할 때 거래금액에 일정금액의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해야 합니다.
  - 물건값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기 때문에 이세금은 최종소비자가 부담하게 됩니다.
- ▶ 그러나, 다음과 같이 일부 생활필수품을 판매하거나 의료·교육관련 용역의 공급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.

- |   |  |
|---|--|
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곡물, 과실, 채소, 육류, 생선 등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의 판매</li> <li>• 허가 또는 인가 등을 받은 학원, 강습소, 교습소 등 교육용역업</li> <li>• 도서, 신문, 잡지(광고 제외)</li> </ul>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연탄, 무연탄, 복권의 판매</li> <li>• 병·의원 등 의료보건 용역업</li> </ul> |
|---|--|

- ▶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는 신고할 의무가 없으나 사업장 현황신고를 하여야 합니다.
  - 1년간의 매출액과 같은기간 내에 주고 받은 계산서와 매입세금계산서를 다음해 1. 1부터 1. 31까지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신고하여야 합니다.

## 일반과세자·간이과세자

※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의 구분 및 차이점

	일반과세자	간이과세자
구 분	1년간 매출액 4,800만원 이상 이거나 간이과세 배제 업종, 지역인 경우	1년간 매출액 4,800만원 이하 이고 간이과세 배제되는 사업, 지역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
매출세액	공급가액 × 10%	공급대가 × 업종별부가가치율 × 10%
세금계산서 발행	의무적으로 발행	발행할 수 없음
매입세액 공제	전액공제	매입세액 × 업종별부가가치율
의제매입세액 공제	모든 업종에 적용	음식업 사업자만 공제

\* 광업·제조업·도매업·전문직 사업자, 다른 일반과세 사업장을 이미 보유한 사업자, 시 이상 지역의 부동산 임대업자, 과세유형장소 등은 간이과세 적용이 배제됩니다.

- 간이과세자로서 당해 과세기간(1.1~6.30 / 7.1~12.31) 공급대가(매출액)가 1,200만원 미만인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는 하되, 세금은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.  
단, 당해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경우는 그 사업개시일부터 과세기간 종료일까지의 공급대가 합계액을 6월로 환산한 금액이 1,200만원 미만인 경우가 해당됩니다.
- 법인사업자의 경우는 예정신고납부(4월, 10월) 및 확정신고납부(7월, 다음해 1월)를 모두 하여야 합니다.

## ⑨ 신고 · 납부방법

- ▶ 부가가치세는 6개월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확정 신고 · 납부하여야 합니다.

사업자	과세기간	확정 신고대상	확정 신고납부기간
일반과세자	제1기 1. 1 ~ 6. 30	1. 1 ~ 6. 30간의 사업실적	7. 1 ~ 7. 25
간이과세자	제2기 7. 1 ~ 12. 31	7. 1 ~ 12. 31간의 사업실적	다음해 1. 1 ~ 1.25

- ▶ 일반과세자의 경우 4월과 10월에는 세무서장이 고지하는 예정고지세액을 납부하고 납부한 예정고지세액은 다음 확정신고납부시에 공제됩니다. 단, 아래의 경우는 예정신고 하여야 합니다.

예정신고대상자	과세기간	예정신고납부기한
•신규사업자	제1기 예정신고(1. 1~3. 31실적)	4. 1 ~ 4. 25
•예정고지된 사업자라도 조기환급 등을 받고자 하는 경우	제2기 예정신고(7. 1~9. 30실적)	10. 1 ~ 10. 25



## 부가가치세 안내

- ▶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의 불이익은 다음과 같습니다.
  - 관할 세무서장이 조사한 결과에 의해 납부세액을 결정하여 고지합니다.
  - 신고불성실 가산세와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하게 됩니다.
- ※ 부가가치세 신고 · 납부 요령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 
국세청 홈페이지([www.nts.go.kr](http://www.nts.go.kr)) → '신고 · 납부' → '부가가치세'를 참조



### 세액계산 방법

- ▶ 일반과세자의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계산합니다.



$$\text{납부세액} = \text{매출세액} (\text{매출액} \times 10\%) - \text{매입세액} (\text{매입액} \times 10\%)$$

- ▶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는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적용한 매출세액에서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적용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계산합니다.



$$\text{납부세액} = \text{매출액} \times \text{부가가치율} \times 10\% - \text{공제세액} (\text{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} \times \text{부가가치율})$$

- ※ 간이과세자에 적용되는 업종별 부가가치율

업 종	부가가치율
소매업	15%
제조업, 전기 · 가스 및 수도사업, 재생재료 수집 · 판매업	20%
건설, 부동산임대, 농 · 수 · 임 · 어업, 기타 서비스업, 음식 · 숙박업	30%
운수 · 창고 및 통신업	40%

- ▶ 매입시에 세금계산서를 받지 않으면 그 세액을 공제 받지 못하므로 세부담이 그 만큼 늘어납니다.

## 참고 부가가치세 계산 사례

### ▷▷ 사례 1) 간이과세자

- 성명 : 김성실
- 상호(업종) : 종로상회(소매/잡화)
- 2009년 1기 (1. 1 ~ 6. 30) 동안 매출은 2,500만원이며 그 중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을 발행한 금액은 1,000만원임
- 위 기간 중 매입은 1,100만원 (부가가치세 100만원 포함)으로서 전액 세금 계산서를 수취함

- \* 매출세액 :  $375,000\text{원} = 2,500\text{만원(매출)} \times 15\%(부가가치율) \times 10\%(세율)$
- \* 공제세액 :  $280,000\text{원} = ① + ②$ 
  - ① 매입세금계산서 등 수취세액 공제 = 100만원 (세금계산서 매입세액)  $\times 15\%(부가가치율)$
  - ②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공제 = 1,000만원(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발행금액)  $\times 1.3\%(공제율)$
- \* 납부할 세액 :  $95,000\text{원} = \text{매출세액} - \text{공제세액}$

### ▷▷ 사례 2) 일반과세자

- 성명 : 홍길동
- 상호(업종) : 종로전자(도소매/가전제품)
- 2009년 1기(1. 1 ~ 6. 30) 동안 매출은 8,000만원(부가가치세 제외)이며 그 중 도매로 판매한 3,000만원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며, 나머지 소매 판매 5,000만원은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였음
- 위 기간 중 매입은 6,000만원(부가가치세 제외)으로서 전액 세금계산서를 수취함
- \* 매입한 물품 중 500만원은 홍길동씨의 가정 소비목적으로 구매하였음

- \* 매출세액 :  $800\text{만원} = 8,000\text{만원(매출)} \times 10\%(세율)$
- \* 매입세액 :  $550\text{만원} = (6,000\text{만원} - 500\text{만원}) \times 10\%(세율)$
- \* 가사용으로 구매한 물품구입 500만원의 매입세액은 불공제 대상임
- \*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발행공제 :  $65\text{만원} = 5,000\text{만원} \times 1.3\%(공제율)$
- \* 납부할 세액 :  $185\text{만원} = \text{매출세액} - \text{매입세액} - \text{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공제}$

# 01-1 세금계산서 수수요령

## 세금계산서의 중요성

- ▶ 재화나 용역의 매입시 매입세금계산서를 받아야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.
- ▶ 다음의 경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.
  -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않거나, 필요적 기재사항이 누락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인 경우
  -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않거나 부실기재한 경우
  -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매입세액
  - 비영업용 소형승용차의 구입과 임차 및 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
  - 접대비지출 관련 매입세액
  - 면세관련 매입세액 및 토지관련 매입세액
  - 사업자등록전 매입세액 (다만, 등록신청일로부터 역산하여 20일 이내의 것은 공제가능)

## 세금계산서를 주고 받을 때 유의사항

- ▶ 세금계산서를 수취할 때에는 거래상대방의 사업자등록 상태(휴·폐업자인지 여부), 과세유형(간이과세자인지 여부)과 아래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정확히 기재되었는지 확인하여야 합니다.

- ① 공급자의 사업자등록번호, 성명 또는 명칭
- ② 공급받는자의 사업자등록번호
- ③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
- ④ 작성연월일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일자와 동일한지

국세정 흠택스([www.hometax.go.kr](http://www.hometax.go.kr))에서 상대방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여 “과세유형 및 휴·폐업상태”를, 상대방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여 “사업자등록유무”를 조회할 수 있고, 국세청 홈페이지([www.nts.go.kr](http://www.nts.go.kr))에서 본인의 사업자등록번호와 상대방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면 “사업자과세유형 및 휴·폐업조회”를 할 수 있습니다.

## 매입자 발행 세금계산서 제도

- ▶ 공급자(일반과세자)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는 경우, 공급받은 사업자(매입자)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“거래사실확인신청”을 하고, 공급자 관할세무서장의 확인을 받아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.
  - \* 일반과세자로부터 재화 · 용역을 공급받은 모든 사업자(면세사업자를 포함)는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.
  - \* 거래사실 확인을 신청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제한이 있습니다.
    - 거래시기로부터 15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.
    - 실거래를 입증할 수 있는 영수증 등 증거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.
    - 거래건당 공급대가가 1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.
    - 월별로 2건의 거래에 대하여만 거래사실 확인신청 대상입니다.
- ▶ 신청인이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부가가치세 신고 또는 경정청구 시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는 경우,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.
  - \* 세금계산서를 미 교부한 경우에도 2%의 가산세를 물고 징역형 또는 무거운 벌금형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.

## 위장 · 가공 세금계산서를 주고 받는 경우의 불이익

- ▶ 위장 · 가공세금계산서란?
  - \* 위장세금계산서란 실지 공급자가 아닌 다른 사람 명의로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말하고, 가공세금계산서란 실물거래 없이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말합니다.
- ▶ 위장 ·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에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으며, 공급가액의 2%에 상당하는 가산세,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물어야 합니다.
  - \* 또한 소득금액 계산시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하며, 징역형 또는 무거운 벌금 형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.
- ▶ 위장 ·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경우에는 공급가액의 2%에 상당하는 가산세를 물고 징역형 또는 무거운 벌금형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.
  - \* 세금계산서를 미 교부한 경우에도 2%의 가산세를 물고 징역형 또는 무거운 벌금형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.



세무

www.nts.go.kr

## 세무상담안내

세금에 관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다음의 상담기관을 이용하면 됩니다.

### 국세청 고객만족센터

고객불만 사항 및 세무상담에 대하여 성심을 다해 처리하겠습니다.

[전화상담이용안내] 전국 어디서나 지역번호 없이 1588-0060

- 고충·건의·불만·칭찬은 1번
- 세무상담은 2번

[인터넷이용안내] 국세청 홈페이지([www.nts.go.kr](http://www.nts.go.kr))에서 국세고객만족센터를 클릭하거나  
직접 국세청 고객만족센터(<http://call.nts.go.kr>)로 접속하면

- 국세행정 또는 세법에 고충·건의·불만·칭찬 - 『고객의 소리』
- 국세에 관한 궁금하신 내용에 대한 질의 - 『세무상담』

이용할 수 있습니다.

### 세무서 납세자보호 담당관

- 세금에 관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고지된 세금이 얹을하고 부당하다고 생각되는 경우  
에는 전국의 모든 세무서에 설치되어 있는 납세자보호담당관을 찾아가 상담하면 됩니다.
- 또한 국세와 관련된 고충이 있을 경우 집이나 사업장의 일반 유선전화(휴대전화 제외)로  
대표번호 1577-0070을 누르면 발신전화 소재 행정구역 관할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실로  
직접 연결됩니다.

※ 지방세(재산세, 자동차세 등)에 관한 사항은 해당 시·군·구청에 문의하기 바랍니다.

납세자를 국세청의  
최우선 고객으로 모시겠습니다.



**국세청**  
NATIONAL TAX SERVICE

서울특별시 종로구 청진동길 44 (우110-705)